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1.

발의자 : 홍익표 · 김병관 · 김영호
권미혁 · 김민기 · 강창일
김한정 · 소병훈 · 윤후덕
김두관 · 김정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. 이를 위해 11%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%로 인상함(안 제69조제2항).

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28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‘11’을 각각 ‘15’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소비세의 적용례)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<u>11</u>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100분의 <u>11</u>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, 지방교육세,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.</p>	<p>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15</u>----- -----.</p> <p>----- <u>15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